

1. 개정이유

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테러로 인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조항 개정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(안 제39조제1항)

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준점을 준용하여,
테러피해자의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
(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 → 테러사건 피해의 발생을
안 날로부터 3년 이내거나 테러사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)

나. 부칙 신설(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)

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부칙에 적용례 규정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결과 별도 의견 없음(2025. 3. 21. ~ 3. 31.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7. ~ 5. 19.) 예정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”을 “테러사건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거나 테러사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행하여진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) ① 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<u>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</u>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39조(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테러사건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거나 테러사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무조정실 기획총괄부	
연 락 처	(02) 2100 - 2039